

산업 회보 2013/3/20 – 시설 담당 피허가자

Board of Barbering and Cosmetology (Board)는, 시설 라이선스를 보유하고 있는 살롱 또는 이발소의 소유자가, 사업 및 전문직업 법 7348부에 따라, 이발사, 미용술, 매니큐어 미용사, 미용 또는 전기제모 면허를 개인적으로 보유하고 있지 않더라도, 시설 담당 자격이 부여된 피허가자라는 사실을 피허가자에게 알리기를 원합니다.

Business and Professions Code (사업 및 전문직업 법) 7348부는 다음과 같이 명시합니다:

“시설은 견습생을 제외하고 이 지부에 의거하여 면허를 가진 사람이 항상 담당해야 한다.”

따라서, 모든 시설은 담당 피허가자를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. 담당 피허가자는 시설 소유주, 미용사, 이발사, 미용 전문가, 매니큐어 미용사 또는 전기 제모 전문가일 수 있습니다.